

가족수당 지급 구분표(제10조제1항 관련)

(달러: 미합중국 화폐 단위임)

적용범위	부양가족		월 지급액	비고
1. 국가공무원 (재외공무원은 제외한다)	배우자		40,000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원	
	자녀	첫째자녀	50,000원	
		둘째자녀	8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20,000원	
2. 재외공무원	배우자		재외근무수당 월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1. 가족수당 지급대상의 인정은 관할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거쳐 소속 장관이 한다. 2.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에 배우자와 함께 가지 않는 경우에는 이 표 제1호란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배우자가 전쟁 또는 내전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이 표 제2호란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3. (가산금) 부양가족 중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월 80달러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자녀 1명당		60달러	